

홍콩의 번호사용료 부과 방침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연구원 전수연
(T. 570-4262, syjun@kisdire.kr)

1. 개요

지난 3월 홍콩의 통신규제기관 OFTA(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는 번호사용료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문서를 발표하였다.¹⁾ 홍콩의 경우 현재까지 사업자들에게 부여되는 번호자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통합허가제도(Unified Carrier Licence, 이하 UCL) 도입 계획의 일환으로 번호자원을 유료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²⁾ 현재 홍콩의 통신사업자는 7 HK \$(유선), 18 HK \$(무선)의 가입자당 면허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UCL로의 전환에 따라 이는 모두 8 HK \$로 일원화될 예정이다.³⁾ 또한, 가입자 번호당 3 HK \$의 번호사용료 부과 방침에 따라 유선사업자의 경우 그 부담이 4 HK \$ 만큼 증가하며, 무선사업자의 경우 7 HK \$ 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홍콩의 번호사용료 제도 추진경과 및 그 필요성 등에 대한 OFTA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UCL과 번호사용료

OFTA는 2005년 9월, UCL 도입에 대한 정책심의회에서 처음으로 면허사용료(licence fee) 내에 번호사용료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⁴⁾ UCL은 통신사업자가 하나의 허가권만을 가지고 유무선을 포괄하는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UCL 도입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는 2006년 7월에 유무선융합(FMC)에 대한 정책심의회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⁵⁾ OFTA는 상기 정책심의회 결과를 참작하여 UCL 도입 및 번호사용료가 UCL 면허사용료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⁶⁾

1) OFTA, "Why We Propose to Charge a Fee on Telephone Numbers?," 2008. 3.

2) 2004년 ITU의 조사에 따르면, 99개 조사 국가 가운데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41개국에 이 같은 번호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ITU, "Numbering Survey," 2004.

3) 1 HK \$ = 0.13 US \$

4) OFTA, "Revision of Regulatory Regimes for Fixed-Mobile Convergence Consultation Paper," 2005. 9. 21.

5) OFTA, "Deregulation for Fixed-Mobile Convergence Second Consultation Paper," 2006. 7. 14.

<표 1> 홍콩의 UCL 도입

UCL 도입에 관한 정책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ED(Secretary for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⁷⁾: 통신법 section7(3)에 따라 일반 조건, 면허기간의 타당성, 면허 사용료를 제정 - TA(Telecommunications Authority)⁸⁾: 통신법 section7(4)에 따라 UCL의 특별조건들과 전환준비에 대한 자문 			
SCED의 정책심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CL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UCL 도입에 따라 공중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가를 받은 모든 신규 및 기존 사업자들은 동일한 일반조건 부과 - UCL의 면허기간(Licence Period): 신규-15년, 기존사업자의 면허만료 후 전환-15년, 기존사업자의 전환-기존 면허의 잔여기간 - UCL의 면허사용료(Licence Fee): 기존 면허사용료 구성 요소에 추가로 번호사용료 도입, 번호사용 효율성 증진, 8-digit 번호계획 수명 연장 목적 			
	Fixed fee component	Subscriber-based fee components	Non-subscriber-based fee components
UCL 면허 사용료 구성	(1) Fixed fee: HK \$1,000,000 (HK \$100,000 for provision of external fixed service only and/or mobile service other than land mobile service only)	(2) Customer connection fee: HK \$8 per connection (both mobile & fixed) (Note: existing fee is HK \$7 under FCL and HK \$18 under MCL)	(3) Number fee: HK \$3 per subscriber number(New component) (4) Spectrum management fee(*) (5) Base station/land station fee(*)
* 현재 유무선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준용			
TA의 정책심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에 발급되어 2010년에 만기 예정인 4개의 유선면허의 UCL로의 전환 시 공통 특별 조건 (Tariffs, Billing, Telephone Directory, Directory Information Service, Number portability, Emergency Call Services 등)을 규정 - 정보제공, 서비스 계약 및 분쟁 조정 등 고객 보호 차원의 몇 가지 신규 조항 추가 - 그 외 spectrum utilization fee, coverage of television program service, 보편서비스 의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 - 4개의 기존 유선면허는 2010년 기간 만료 이후 UCL로 대체됨. PCCW에 한해 기존 의무사항(보편적 서비스, 요금할인고지, 상호접속료 사전 승인)은 유지 - 2000년에 발급된 4개 3G 면허, 2005/06년에 발급된 9개 2G 면허, CDMA면허의 경우 전환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주파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performance bond, payment of spectrum utilization fee, open network access)는 남은 면허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6) 현재 최종적인 UCL 정책심의는 SCED(면허사용료, 일반면허조건)와 TA(세부조건과 전환준비 세부사항)에서 각각 진행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번호사용료에 대한 제안은 2007년 11월 Telecommunications Numbering Advisory Committee의 회의에도 상정된 바 있다.

3. 홍콩의 번호사용료 부과 방침

가. 번호사용료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OFTA는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번호자원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번호사용료 제도의 타당성을 찾고 있다.

홍콩의 경우 유무선 모두 8자리 번호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총 1억 개의 번호자원을 통신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⁹⁾ OFTA는 중국 본국과의 교류 확대와 VoIP 서비스 도입으로 지역 번호(local numbers)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15년경에는 현재의 8자리 번호자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8자리 번호자원의 고갈은 필연적으로 자리수의 증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번호변경 등에 수반되는 물리적인 비용과 자릿수 증가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번호자원은 주파수와는 달리 물리적인 제약이 존재하지 않아, 번호확장을 수단으로 그 총량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이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에 따라 희소한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OFTA는 번호사용료가 불필요한 번호자원의 신청을 줄이고, 사용되지 않는 번호를 반납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 8자리 번호체계의 수명을 연장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FTA는 유무선사업자가 보유한 전화번호의 약 40%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번호사용료 부과에 따라 이들 미사용 번호 1,300만 개 가운데 절반 정도만 반환하더라도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¹⁰⁾

나. 정부수입 확대에 대한 OFTA의 반론

번호사용료 부과 계획은, 번호사용료 징수에 따른 정부수입 확대라는 부정적 시각을 불러 일으켰으나, OFTA는 UCL 전환에 따른 가입자 당 면허사용료의 인하를 고려할 경우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수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유선/무선사업자에게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HK \$7, HK \$18

7) SCED, "Consultation Paper on the Creation of A Unified Carrier Licence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Ordinance," 2007. 12. 21.

8) TA, "Licensing Framework for Unified Carrier Licence," 2007. 12. 21.

9) '0', '1', '4' 로 시작하는 번호, '200', '3000', '50', '600', '70', '80', '900', '99'와 같은 몇몇 특별 코드와 번호들, 미래의 9자리 혹은 10자리 번호계획을 위해 지정해둔 특정 2자리 prefix 번호들을 제외하면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번호자원은 약 5천 6백만 개에 한정된다.

10) 홍콩의 통신 사업자에게 부여된 번호자원은 총 3,300만 개에 이르고 있다.

의 면허사용료는, UCL 전환에 따라 HK \$8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UCL로 전환한 무선사업자는 가입자당 연간 HK \$11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즉, 무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말기당 한 개의 번호 부여를 가정하면, 총 면허사용료는 HK \$7 만큼 감소하게 된다. 유선사업자의 경우 그 비용은 HK \$4 만큼 증가하게 되지만, OFTA는 번호사용료와 관련된 규정이 사업자의 자발적인 전환 또는 기존 면허가 만기되어 UCL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번호사용료 부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OFTA는 UCL 전환 및 번호사용료 도입에 따라, 정부 차원의 추가적 면허 수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면허사용료 지급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 통신요금 인상 효과에 대한 OFTA의 반론

번호사용료 부과에 대해, 이것이 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OFTA는 번호사용료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무선 통신사업자의 경우 번호사용료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전체적인 면허사용료는 하락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에 대한 요금 하락의 여지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OFTA는 유선사업자의 경우 UCL로의 전환 전까지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미사용 번호를 회수하여 비용을 절감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 따라, 번호사용료 부과가 통신요금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경쟁이 심화되는 현 통신시장의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추가 비용을 통신요금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OFTA, "Revision of Regulatory Regimes for Fixed-Mobile Convergence Consultation Paper," 2005. 9. 21.
- [2] _____, "Deregulation for Fixed-Mobile Convergence Second Consultation Paper," 2006. 7. 14.
- [3] _____, "Why We Propose to Charge a Fee on Telephone Numbers?," 2008. 3.
- [4] SCED, "Consultation Paper on the Creation of A Unified Carrier Licence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Ordinance," 2007. 12. 21.
- [5] TA, "Licensing Framework for Unified Carrier Licence," 2007. 12. 21.